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사용자 매뉴얼 (ver 4.0)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제1절 개요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란?	1
가. 개념	• 1
나. 개방 목적	
2.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개발 추진 경과	1
제2절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구성 방향성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선정기준	2
가. 안전한 데이터 중심의 개방(Safety) - 개인정보보호 중점	2
1)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제외	2
2)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기법 적용	2
나. 활용중심의 데이터 개방(Utilization) —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개방	2
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개방(Reliability)	3
2. 개방 데이터셋의 생성 형태	3
가. 개방데이터셋 생성 방식 및 범위	3
1) 진료내역정보	3
2) 의약품처방정보	3
3) 건강검진정보	
나. 개방데이터셋 갱신 주기	3
다. 개방데이터셋 제공 형태	4
제3절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상세	
1. 진료내역정보 ······	5
가. 개념 및 구성	5
1) 개념	. 5

제3절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상세 (계속)

2)	구성	• 5
나.	개방항목 설명	5
다.	진료내역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	8
2. 의	약품처방정보	9
가.	개념 및 구성	9
1)	개념	9
2)	구성	9
	개방항목 설명	
다.	의약품처방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	11
3. 건	 강검진정보	12
가.	개념 및 구성	12
	개념	
2)	구성	12
나.	개방항목 설명	12
다.	건강검진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	15
	제4절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다운로드 방법	
1. 국	민건강보험자료 궁유서비스(NHISS) 웹페이지 활용 방법 소개 ···································	17
	제5절 사용자 지원 사항	
1. 국	·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활용가이드 및 사례 제공 ···································	19
	· - - 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개방을 위한 웹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문의기능 지원 ·································	
3. 국	·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다운로드 전에 데모자료 제공기능 지원 ···································	19
	Q&A 묻고 답하기	

제1절 개요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란?

가. 개념

국가중점 개방데이터는 정부3.0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민간으로부터의 개방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개방되는 공공개방데이터이다.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축적된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진료내역정보, 의약품처방정보, 건강검진정보이다. 공단에서는 안전한 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개인정보와 민감성데이터는 제외 또는 마스킹 처리를 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개방 데이터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문을 실시하였다. 제공되는 데이터의 대상 년도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이며, 향후 대상 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개방을 통하여 관련 산업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다.

나. 개방 목적

첫째, 법률에 근거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 보유 관리하고 있는 주요 보건 의료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한다. **둘째**, 국기중점 개방데이터(3종)를 활용한 건강정보 관련 산업계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 기회 창출을 돕고자 한다. 셋째, 개인중심의 진료내역, 의약품처방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개방함으로서 의료기관의 고품질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자 한다. 부가적으로는 건강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보건 의료 산업 국가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개발 추진 경과



2011년 전국민 5천 만 명의 9년간(2002~2010년)의 건강보험 정보를 수잡하여 초기 국민건강정보DB를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센터 등 1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시범 연구시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자료 공개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정보DB 공개 적정수수료 체계 개발 컨설팅.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운영규정(규정 제130호)」를 제정하였고, 2015년 1월 표본코호트DB 이용신청 및 국민단강정보DB 연구자 지원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하였다. 2015년 12월 민간개방을 위해 진료내역정보. 의약품처방정보, 건강검진정보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를 구축 제공하고, 2016년 12월(현재)에 추가 자료 2014~2015년도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 참조하세요.

○ 국민건강정보DB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개방데이터 발굴 및 생성을 목적으로 구축한 모집단DB 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 진료내역상세(병원/의원 이용 내역, 노인장 12양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태이블 수는 3,544개. 용량은 약 21,236GB 임

제2절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구성 방향성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선정기준

가. 안전한 데이터 중심의 개방(Safety) - 개인정보보호 중점

1)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 제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ex.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국민건강보험자격번호 등),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진 등))등은 국가 중점 개방데이터(3종) 항목에서 제외 하였다.

2)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기법 적용

타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 필터링 하여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이터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개별 항목에 적합한 비식별화 처리기법을 적용하여 식별가능성을 제외하였다.

구 분	내 용
표본의 추출	• 각 연도별 진료 및 건강검진 수진 환자 100만명 무작위 추출 - 진료환자, 약품차방환자, 건강검진 수진자를 연모별로 각각 1백만 명씩 무작위로 추출
자료별 조합제한	• 동 자료는 단면자료로써 각 DB별 개인일련번호와 청구일련번호를 다르게 하여 제공(연계 불가능)
개인식별자 제거	 주민등록번호(13) → 개인일련번호(8자리)
범주화	 연령 그룹화 연령 → 연령대(5세 단위) 85세 이상은 '85세 이상'으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민감상병 D, O, P, X, Y코드(5종, 114개)를 대분류화(예:D***) D(7개 코드): 남성 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O(81개 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자궁외 임신 등 P(4개 코드): 기타 선천성 감염 및 기생충질환 X(1개 코드): 알코올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Y(2개 코드): 특수목적 코드, 완력에 의한 성적 학대 등
최상위 지역코드 제공	• 소규모 지역에 거주하는 표본의 인식을 고려하여 시도코드 에 한하여 제공(17개 시도단위 제공)

나. 활용중심의 데이터 개방(Utilization) -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개방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는 개방되는 데이터 항목 및 제공 방법 등에 관련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방항목 및 제공형태 등을 구성하였다. 단수요조사를 통하여 요구되었던 항목의 일부는 민감성 데이터로 분류되어 개방이 제한되었으며, 공단은 수요자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고유식별정보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로 ① 주민등록번호 ② 여권 번호 ③운전면허의 면 허번호 ④ 외국인 등록 번호를 말함(개인정보보 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 식별 정보의 범위))

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개방(Reliability)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가 다양한 분야에서 믿고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데이터 발굴 시점 부터 데이터 값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어려운 항목은 개방 항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정보 문진항목 중 수검자가 직접 기입하는 항목 등은 데이터 값의 오 류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 하는 지는 「제3절 국민건강정보 데이터 상세 - 4 건강 검진정보- 가. 개념 및 구성- 1) 개념 참조」

2. 개방 데이터셋의 생성 형태

가. 개방데이터셋 생성 방식 및 범위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는 2002년부터 2015년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100만 명의 진료내역, 의약품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정보이다. 100만 명의 선별은 무작위 선별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제한됨에 따라 진료내역정보와 의약품처방정보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였다.

1) 진료내역정보

진료내역정보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당 년도에 요양(병/의원)기관으로 부터의 진료내역이 1건 이상 있는 가입자 100만 명을 무작위로 선별하고, 항목 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 해당 가입자의 기본정보와 진료정보를 추출하여 진료내역정보 데이터셋을 1차적으로 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구성된 진료내역정보 데이터셋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하여 구간분포비율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 정제 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진료내역정보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2) 의약품처방정보

의약품처방정보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당 년도에 요양(병/의원) 기관으로부터의 의약품처 방내역이 1건 이상 있는 가입자 100만 명을 무작위로 선별하고, 항목 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 해당 가입자의 기본정보와 의약품처방정보를 추출하여 의약품처방정보 데이터셋을 1차적으로 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구성된 의약품처방정보 데이터셋의 데이터 크기를 축소하기 위하여 구간 분포비율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데이터 정제 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의약품처방정보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다.

3) 건강검진정보

건강검진정보는 해당 년도에 건강검진을 수진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100만 명을 무작위로 선별하고, 항목 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 가입자의 기본정보와 검진결과정보를 추출하여 국민건강정보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나. 개방데이터셋 갱신 주기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의 모든 개방데이터셋은 매년 12월에 2년 전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여 1년 단위로 데이터를 갱신 한다. 예를 들면 2014년도 데이터는 2016년 12월 추가되는 형태이다.

다. 개방데이터셋 제공 형태

데이터셋의 자료 구조(포맷)는 CSV(Comma Separated Value)이며, 데이터 활용 및 다운로드의 편의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분할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제3절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상세

1. 진료내역정보

가. 개념 및 구성

1) 개념

진료내역정보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요양기관(병, 의원 등)으로부터의 진료이력이 있는 각 연도별 수진자 100만 명에 대한 기본정보(성. 연령대. 시도코드 등)와 진료내역(진료과목코드, 주상병 코드, 요양일수, 총처방일수 등)으로 구성된 개방데이터이다.

2) 구성

총 19개의 변수로 가입자 일련번호와 진료내역 일련번호, ① 수진자 기본정보 : 성, 연령, 거주지 시도코드와 같은 기본정보 ② 진료상세 정보 : 주상병, 부상병, 요양일수, 입·내원일수, 총 처방일수 등 구체적인 진료내역 정보, ③ **요양급여 청구 심사 결과** : 요양 급여비용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보험자와 수진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금액 등 요양급여 청구 심사결과 값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나. 개방항목 설명

			제공항목	속성?	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표현형식 /단위	예시	비고
1	기준년도	STND_Y	• 해당 정보의 기준년도를 제공함	YYYY	2009	
2	가입자 일련번호	IDV_ ID	• 해당가입자에 부여한 일런번호 - 1 ~ 1,000,000	N	1	
3	진료내역 일련번호	KEY_SE Q	• 해당진료내역에 대한 일련번호	N	1	
4	성별코드	SEX	해당 정보 대상자의 성별을 제공함 성별: 1(남자), 2(여자)	N	1	•
5	연령대 코드	AGE_ GROUP	• 기준년도에 수진자의 나이를 5세 단위로 그룹화(범주화)하여 구분한 코드 - (총 18개 그룹) 0~84세까지 5세 단위 그룹화, 85세 이 상은 85+로 그룹화 그룹 연령대 그룹 연령대 1 0~4세 10 45~49세 2 5~9세 11 50~54세 3 10~14세 12 55~59세 4 15~19세 13 60~64세 5 20~24세 14 65~69세 6 25~29세 15 70~74세 7 30~34세 16 75~79세 8 35~39세 17 80~84세 9 40~44세 18 85세+	N	11	•
6	시도코드	SIDO	• 해당 수진자 거주지의 시도코드	N	26	•

◎ 요양기관이란?

-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 기관
- ② 약시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③ 약시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희귀의약품센터'
-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 의료원 및 보건지소
- 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거진료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2조(요양기관))

◎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에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노숙인, 그 밖에 생활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말함

				세공항목			속성?	 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명		표현형 식 /단위	예시	비고
			지의 데이! 코드명 / 11 서울 26 부산 27 대구 28 인천 29 광주 30 대전 31 울산	터에는 해당 항 \(\begin{aligned} \	목이 존재하지 E명	시도명			
7	요양개시 일자	RECU_ FR_DT	내원한 연, • (입원진료) 하 • 명세서 서	월, 일 당상병의 진료를 식구분을 위한	위하여 그 달에 초 - 코드	진자가 요앙기관에	YYYY MM DD	2008 1124	
8	서식코드	FORM_ CD	02 03 06 07 08 09 10 11 ZZ	정성	의과 입원 의과 외래 조산원 입원 보건기관 입원 보건기관 외래 정신과 낮병동 정신과 입원 정신과 외래 결측 또는 해당사항		N	02	•
9	진료과목 코드	DSBJT_ CD	경우 실제전 상병 명에 - 진료과목이 - 보건복지부	인료를 받은 진호 해당되는 진호 2개 이상에 해 고시 제2014-92호	로과목, 의원급 료과목 당하는 경우 상 : 「요양급여비용	의료기관일 경우 병별로 모두 제공 청구방법, 심사청구 목별 코드">를 따름 기관기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에방의학과 지과보철과 지과보철과 지과보철과 지과보철과 지과보존과 구강막안면외과 지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막안면망사 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지과 한방대과 한방부인과 한방신정정신과 침구과 한방생절과 지구과 한방생절과 지구과 한방생절과	N	10	

◎ 명세서

요앙기관에서 수진자에게 진료, 조제 등을 하고 청구방법에 따라 작성한 문서로 요앙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앙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종류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됨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 주로 외계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포함됨 (의료법 제3조 제2항 참조)

			제공항목	속성?	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표현형식 /단위	예시	비고
10	주상병 코드	MAIN_S ICK	명세서 상의 주상병의 분류기호 - 통계청 고시에 따른「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4, 5, 6차 상병분류 기호 참조 □ 진료기간 중 최종적으로 진단받은 병태로서 치료나 검사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 병태가 둘 이상일 경우 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한 가지 병태가 주상병 □ 전료 개시 후 주된 상병과 관련된 질환이나 합병증이발병하였을 때는 이로 인한 자원소모가 많다고 하여도기존 주상병 유지 □ 진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 증상이나 검사의이상소견 또는 문제점을 주상병으로 함	Text	R01	•
11	부상병 코드	SUB_ SICK	• 명세서 상의 주된 상병분류기호 외의 추가 상병(부상병)의 분류 기호 - 결측(ZZ), 정상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 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4, 5, 6차 상병분류 기호 참조 ☑ 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 부상병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제공 ☑ 진료기간 중 다루지 않은 과거에 진료 받았던 병태는 부상병이 아님	Text	C780	•
12	요양일수	VSCN	• 수진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 -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원내 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 - 내원(또는 입원일수)와 원내투약일수가 중복일 때는 1일로 계산함 - 내원일수는 초진과 재진을 포함함	N/일	22	
13	입내원 일수	RECN	 (입원진료) 수진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퇴원 일까지의 실 일수 (내원진료)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 수 1일에 2회 이상 동일인에게 초진 및 재진을 한 경우 내원일수는 1일로 표기됨 	N/일	3	
14	심결 가산율	EDEC_ ADD_ RT	요양개시일자 기준으로 종별 규모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 적용되는 진료비의 가산율(%) 요양기관 종류 건강보험 의료급여 상급 종합병원 30% 22% 종합병원 25% 18% 병원(요양병원 포함) 20% 15% 의원, 보건의료원 등 15% 11% ※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바이러스 혈청검사 등)는 0으로 표기됨	N/%	30	
15	심결요양 급여비용 총액	EDEC_ TRAMT	 심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정산심사결과 수진자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인「심결본인부담금」과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심결 보험자부담금」합친 금액 심사 결과 삭감사유(주상병 누락, 착오 청구 등) 발생으로 심결요양급여비용총액이 심결본인부담금 및 심결보험자부담금의 합과 다르거나 "0"일 수 있음(요양급여비용 심사보류, 불능 등) 	N/원	38570	
16	심결본인 부담금	EDEC_ SBRDN_ AMT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를 통해 결정된 수진자 본인이 부담해야할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동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	N/원	1250	

			제공항목	속성	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표현형식 /단위	예시	비고
17	심결 보험자 부담금	EDEC_ JBRDN_ AMT	• 심결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N/원	4580	
18	총처방 일수	TOT_ PRES_D D_CNT	•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 투약하도록 처방한 일수의 합	N/일	63	
19	데이터 기준일자	DATA_ STD_DT	• 데이터 작성 기준 일자	YYYY MM DD	2016 1220	

※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개방항목의 경우 개별 코드 값의 명칭 제공 시 데이터량의 증가에 따른 제공 서버의 부하 및 다운로드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코드 값만 제공함, 해당 코드의 명칭은 항목 설명을 참조하거나, 관련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

다. 진료내역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

- 행정구역이 연도별로 각각 코드화 되어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부터 신규로 편입됨에 따라, 2011년까지의 데이터에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 주상병코드와 부상병코드의 경우 통계청 고시에 따른「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6차 개정판 (KCD-6)」상병분류 기호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통계청 고시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제7차 개정판」이 시행되므로 변경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2002년~2015년의 진료내역정보가 존재하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내역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의약품처방정보

가. 개념 및 구성

1) 개념

의약품처방정보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의약품처방이력이 있는 각 연도별 수진자 100만 명에 대한 기본정보(성, 연령대, 시도코드 등)와 의약품처방전별 개별 의약품에 대한 처방내역(요양개시일자, 1회투약량, 1일투약량, 총투여일수 등)으로 구성된 개방데이터이다.

2) 구성

총 15개의 변수로 가입자 일렬번호, 의약품처방내역 일렬번호와 ① **수진자 기본정보** : 가입자일련번호, 성, 연령, 거주지 시도코드와 같은 기본정보 ② **의약품 처방 상세정보** : 처방전일련번호, 요양개시일자, 의약품 일반성분명코드, 1회·1일 투약량, 총 투여일수 단가, 금액 등 상세 의약품처방 내역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나. 개방항목 설명

			제·	공항목			속성	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병		표현형 식 /단위	예시	비고
1	기준년도	STND_Y	• 해당 정보의] 기준년도를	제공함		YYYY	2009	
2	가입자 일련번호	IDV_ID	• 해당가입자· - 1 ~ 1,000		변번호		N	1	
3	처방내역 일련번호	KEY_ SEQ	• 해당 처방전	<u></u> 에 부여한 일	련번호		N	1	
4	일련번호	SEQ_NO	• 해당 약품 일	련번호			N	1	
5	성별코드	SEX	해당 정보성별: 1(남		을 제공함		N	1	•
6	연령대 코드(5세 단위)	AGE_ GROUP	구분한 코드	·룹) 0~84세까기	. –		N	11	•
7	시도코드	SIDO			신규로 편입됨。	∥ 따라, 2011년까 않음	N	26	•

○ 의약품일반성분명코드 검색 방법

- 건강보험사 평가 원www.inacrler) > 약품상단회> 약품수분에서 구성분고다를 입력시 제형 구성분명칭 함량 단위 등 감색가능

				제공항목				속성?	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표현형식 /단위	예시	印
	0 1 0		코드명	시도명	코드명	۸				
			11	서울특별시	42	강원도	1 0			
			26	부산광역시	43	충청북도				
			27	대구광역시	44	충청남도				
			28	인천광역시	45	전라북도				
			29	광주광역시	46	전라남도				
			30	대전광역시	47	경상북도				
			31	울산광역시	48	경상남도				
			36	세종특별자치시	49	제주특별자	치도			
			41	경기도						
			(외래³	V로) 해당 상병의	요양급여	를 위해 수?	인자가 요양기관에	YYYY		
3	요양개시	RECU_		한 연, 월, 일	0 1	, , , , , ,		MM	2008	
,	일자	FR_DT			근로 이곳	서 그 다세 최	초 입원한 연 월 일		1124	
			• (입원전	(15) 애당 강명의 신	교를 취이	시 그 일에 4:	소 옵션만 먼 펄 필	DD		
			 의약 	품의 주성분코드	Ē.				3.3	
	약품		• 매월	고시되는 보건	복지부	고시「약계	세급여목록 및	영문,		
)	일반성분명	GNL_		ㅡ , , c ㅗ c 상한금액표, 참.				숫자	1081	
'		NM_CD		_		1.31		혼합	03A	
	코드			드: 영문, 숫자 · 크크드노 영묘				9자리	СН	
			난, -	구코드는 영문,	숫자 온	합 8자리				
			수진ス	에게 투여한 의익	·품의 1회	투약량(소수	- - - - - - - - - - - - - - - - - - -			
			4사5	입하여 소수 넷제	째자리 :	확인 가능)				
							간 처방한 경우			
			코드	1회 투약	ਨ ।	일 투약량	총투약량			
			6641016	2		3	5			
			② 연고	제 등 외용제 처방시	(ex)더도	'베이트연고 1	l0g를 처방한 경우)			
			- 1회	투약량에 총 투약령	냥 10g, 19	일 투약량, 총	- 투여일수 모두 1			
			코드	1회 투약당	냥 19	일 투약량	총투약량			
			6500023	70 10		1	1			
					11=11-11	00) 1군) 100	기타 이 = 카이터 크리이			
1 0	1회	DD_MQT					일분을 처방한 경우)	N T / ¬III	0.5	
10	투약량	Y_FREQ	- 1회 두				투여일수 모두 1	N/개	2.5	
			코드	1회 투약	량 1'	일 투약량	총투약량			
			6447022	20 5		1	1			
			④ 분할	 투여한 인슐린 제제	 (주사제)	 (ex)휴마로그	주 (1000U/10ml/병)			
			_	1회 4U를 처방한			. 3,			
			_	. – –		수점 5째자	리에서 4사5입),			
				·약량, 총 투여일			-, , , <u>, , , , , , , , , , , , , , , , </u>			
			코드	1회 투약		 일 투약량	총투약량			
			678003			1	1			
				는 보건복지부 3						
			청구방	법, 심사청구서·명 	형세서서?	식 및 작성요 	_령」참조함			
11	1일	DD_EXE	수지기	사에게 1일 간 <u>9</u>	이야포스	· 트d하 회	l수	N/7H	4	
	투약량	C_FREQ	1.62	, 1/1 XE TE *	1 1 1 2	1 14 7	` 1	17//11		
	총투여	MDCN_EX								
12	일수	EC_FREQ	• 해당	의약품을 수진기	사에게 트	투여한 총 역	일수	N/개	2	
					_					
13	단가	UN_COST	• 처방	내역상의 의약품	북 단가			N/원	77	
		Ĭ.	1					1	1	

◎ 단가 산정 방식

- 약가, 치료재료, 원료약 등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4-144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기준을 따르며, 매분기별 약제 실구입가격의 기중평균 가격으로 산정 됨 - 구입약가 산정기준은 매분기별 약제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 기격으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4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고시된 상한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싱헝금액을 구입약기로 신정함 (보본부과)제2014-92호 525급예 용 청구방법 삼사 청구사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참조)

			제공항목	속성?	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표현형 식 /단위	예시	비교
			제품교도 약품명 제약사명 규칙단위 상한금액 실구압가 단가 641100 A연질 180 A제약 1캡셀 245 247 245			
14	금액	AMT	 단가, 1회 투약량, 1일 투약량, 총투여일수를 곱한 금액 예시) 652101370 트렌탈 400 서방정 1회 1정, 1일 2회, 2일 투여시 ⇒ 190(원)×1(정)×2(회)×2(일)= 760원 ※ 단,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게 나올수 있으니 매월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참고하여야 함 	N/원	462	
15	데이터 공개일자	DATA_S DT_DT	• 데이터 작성 기준 일자	YYYY MM DD	2016 1220	

※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개방항목의 경우 개별 코드 값의 명칭 제공 시 데이터량의 증가에 따른 제공 서버의 부하 및 다운로드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코드 값만 제공함, 해당 코드의 명칭은 항목 설명을 참조하거나, 관련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

다. 의약품처방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

- 행정구역이 연도별로 각각 코드화 되어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부터 신규로 편입됨에 따라, 2011년까지의 데이터에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 1일 투약량의 경우 수진자에게 1일 동안 투여한 의약품의 물리적인 양(ex)10ml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일 동안 투여한 횟수를 뜻하므로 데이터 해석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연고제 등 외용제 처방시 (ex)더모베이트연고 10g를 처방한 경우) 1회 투약량은 10g이나 1일 투약량, 총 투여일수 모두 1로 표시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의약품의 제형에 따라 해당 항목의 해석이 다소 달라지므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를 참조하여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이란?

-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단,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인 검진을 시행하는 것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 국가건강검진이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하는 건강 검진
- 1. 「모자보건법」에 따르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는 영유아 에 대한 건강검진
-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 4. 「청소년복지지원법」 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 7.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8. 「암관리법」에 따른
- 암검진 9.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제3호 각 항)

3. 건강검진정보

가. 개념 및 구성

1) 개념

건강검진정보란 2002년~2015년(14개년)동안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40세 이상의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의 「일반검강검진」 결과와 이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에 만40세와 만66세에 도달한 이들이 받게 되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결과이다.

구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 ਦ	1차	2차	선 선무기
이버건	• 지역세대주, 만40세 이상 세대원	1차 검진 결과	2년 1회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만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질환의심자(고위험군)	(비사무직 매년)
생애전환기	• 만 40세에 도달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차 수검자 전체	케다 여러
건강진단	• 만 66세에 도달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사 구심사 신세	해당 연령

※ 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는 연령제한 없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됨. 단 본 건강검진정보에는 20세 미만의 검진결과는 제외하고 구축하였음.

2) 구성

총 34개의 변수로 가입자 일렬번호와 ① 수진자 기본정보 : 성, 연령, 거주지 시도코드와 같은 기본정보 ②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정보 : 신체, 몸무게, 허리둘레 등 신체사이즈 정보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요단백, 감마지피티와 같은 병리검사결과 시력과 청력, 구강검사와 같은 진단검사결과 그 외 음주와 흡연 여부에 대한 문진결과로 구성되어있다.

나. 개방항목 설명

			제공항목	속성?	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표현형식 /단위	예시	비고
1	기준년도	HCHK_Y EAR	• 해당 정보의 기준년도를 제공함	YYYY	2009	
2	가입자 일련번호	IDV_ID	 해당가입자에 부여한 일련번호 1 ~ 1,000,000 	N	1	
3	성별코드	SEX	 해당 정보 대상자의 성별을 제공함 성별 : 1(남자), 2(여자) 	N	1	•
4	연령대 코드(5세 단위)	AGE_ GROUP	● 기준년도에 수진자의 나이를 5세 단위로 그룹화(범주화)하여 구분한 코드 - (총 14개 그룹) 20~84세까지 5세 단위 그룹화, 85세 이상은 85+로 그룹화 그룹 연령대 그룹 연령대 1 20~24세 8 55~59세 2 25~29세 9 60~64세 3 30~34세 10 65~69세	N	11	•

	제2절 국						
			속성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표현형식 /단위	예시	비고	
			4 35~39세 11 70~74세 5 40~44세 12 75~79세 6 45~49세 13 80~84세 7 50~54세 14 85세+				
5	시도코드	SIDO	● 해당 수진자 거주지의 시도코드 - 2012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신규로 편입됨에 따라, 2011년까지의 데이터에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 코드명 시도명 지도명 11 서울특별시 42 강원도 26 부산광역시 43 충청북도 27 대구광역시 44 충청남도 28 인천광역시 45 전라북도 29 광주광역시 46 전라남도 30 대전광역시 47 경상북도 31 울산광역시 48 경상남도 36 세종특별자치시 49 제주특별자치도 41 경기도	N	26	•	
6	신장(5C m단위)	HEIGHT	• 검진자의 키(5CM 단위) ❖ 예) 100~104CM → 100CM	N/Cm	140		
7	체중(5K g 단위)	WEIGHT	• 검진자의 몸무게(5KG 단위) ❖ 예) 25~29KG -> 25KG	N/Kg	45		
8	허리둘레	WAIST	• 검진자의 허리둘레 ❖ 허리둘레 항목은 2008년부터 건강검진 문진항목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기준년도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인 경우 해당 항목 값이 결측 처리되어 제공됨		82		
9	시력(좌)	SIGHT_ LEFT	수검자의 좌측 눈의 시력 - 0.1~2.5 사이의 값으로 표기하며 0.1 이하의 시력은 0.1, 실명은 9.9로 표기	N	0.5		
10	시력(우)	SIGHT_ RIGHT	 수검자의 우측 눈의 시력 0.1~2.5 사이의 값으로 표기하며 0.1 이하의 시력은 0.1, 실명은 9.9로 표기 		0.5		
11	청력(좌)	HEAR_L EFT	• 수검자의 좌측 귀의 청력 - 1(정상), 2(비정상)		1		
12	청력(우)	HEAR_R IGHT	 수검자의 우측 귀의 청력 1(정상), 2(비정상) 		1		
13	수축기 혈압	BP_HIG H	검진자의 최고 혈압으로 심장이 수축해서 강한 힘으로 혈액을 동맥에 보낼 때의 혈관 내압		140		
14	이완기 혈압	BP_LWST	• 검진자의 최저 혈압으로 심장의 완기시의 혈압		81		
15	식전혈당 (공복혈당)	BLDS	• 검진자식사전 혈당(혈액 100ml당 함유 되어 있는 포도당의 농도) 수치		94		
16	총 콜레스테롤	TOT_CH OLE	• 혈청 중의 에스텔형, 비에스테형(유리)콜레스테롤의 합 - 정상치는 150~250mg/dL 약 1/3이 비에스텔형(유리)콜레스테 롤이며 나머지가 콜레스테롤에스테르		164		
17	트리글리 세라이드	TRIGLY CERIDE	단순지질 혹은 중성지질을 뜻함 글리세롤에 3분자 지방산이 에스테르 합한 것으로서 자연계에서 찾아낼 수 있는 지방유도체 가운데 가장 분포가 넓음 정상치는 30~135mg/dL(0.34~1.52-mmol/L)		94		

◎ 요단백 판정 기준?

- 성인인 경우 하루 500mg 이상, 소아는 1시간 동안 체표면적 1제곱면적 당 4mg이성의 단백이 배설될 경우 명백한 단백노, 이 보다 적은 경우(하루 30~300mg)의 단백이 배설되는 경우 미세단백뇨
- 시험지검사법(dipstick method)으로 시험지에 소변을 적신 후 60초 이내에 초록색으로 변색하는 정도로 판정하여 음성(-), 악당성(±), 30mg/dL은 +1, 100mg/dL은 경우 +2, 300mg/dL은 +3, 1000mg/dL은 +4로 판정

◎ 시력 측정 방식?

- 물체의 형태나 그 존재를 구분하는 눈의 기능을 형태각이라 하고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시력,
- 2점을 2점으로서 식별할 수 있는 최초 2점간 거리를 측정하고 이것을 시각으로 표시하고 그 역수에 비례하는 양으로 표시

$\overline{\Box}$		속성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표현형식 /단위	예시	비고
			❖ 트리클리세라이드항목은 2008년부터 건강검진 문진항목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기준년도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 경우 해당 항목 값이 결측 처리되어 제공됨			
18	HDL 콜라게롤	HDL_CH OLE	HDL(고밀도 리포단백질)에 포함되는 콜레스테롤 작은 입자의 콜레스테롤로 세포에 이끌려간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돌려주고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성분 정상치는 30~65mg/dL HDL콜레스테롤 항목은 2008년부터 건강검진 문진항목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기준년도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 경우 해당 항목 값이 결측 처리되어 제공됨	N/ mg/dL	45	
19	LDL 콜레스테롤	LDL_CH OLE	● LDL(저밀도 리포단백질)에 함유된 콜레스테롤 - 입자가 매우 큰 콜레스테롤로 양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나 각종 질병을 야기 하는 성분 - 170mg/dL 이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고LDL혈증으로 봄 ★ LDL콜레스테롤 항목은 2008년부터 건강검진 문진항목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기준년도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인 경우 해당 항목 값이 결측 처리되어 제공됨		예시1 50 예시2 130	
20	혈색소	HMG	• 혈액이나 혈구 속에 존재하는 색소단백으로 글로빈(globin)과 엠 (heme)으로 구성되며 혈중의 산소운반체로서의 역할 수행	N/ g/dL	15.39 84375	
21	요단백	OLIG_PR OTE_CD	•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것 - 1(-), 2(±), 3(+1), 4(+2), 5(+3), 6(+4)로 표기됨	N	1	
22	혈청크레 아티닌	CREATI NINE	크라이타니은 크라이틴의 탈수물로 내인성 단백대시의 종밀산물로서 신장에서 배설되고 그 증감은 음식물에 관계없이 그육의 발육과 운동에 관계함 - 혈청크레아티닌 농도는 신기능장에에 의해 중량함 - 정상치 0.8∼1.7mg/dL	N/ mg/dL	0.8	
23	(혈창19E1) AST	SGOT_A ST	간 기능을 나타내는 혈액검사상의 수치, 간세포 이외에 심장, 신장, 뇌, 근육 등에도 존재하는 효소로 이러한 세포들이 손상을 받는 경우 농도가 증가함 정상치 0~40IU/L		12	
24	(혈창IDEI) ALT	SGPT_A LT	간 기능을 나타내는 혈액검사상의 수치, ALT는 주로 간세포 안에 존재하는 효소로, 간세포가 손상을 받는 경우 농도가 증가함 정상치 0~40IU/L		15	
25	감마 지티피	GAMMA _GTP	간기능을 나타내는 혈액감사상의 수치, 간 내의 쓸때(답판)에 존재하는 효소로 글루타민산을 외부에 팹타드나 아마노산 등으로 옮기는 작용을 함 쓸개듭(답즙) 배설 장애, 간세포 장애 발생 시 혈중에 증가하게 됨 정상치 남성 11~63IU/L, 여성 8~35IU/L	N/U/L	예시1 19 예시2 114	
26	흡연상 태	SMK_ST AT_TYP E_CD	• 해당 수검자의 흡연 상태 여부 - 1(피우지 않는다), 2(이전에 피웠으나 끊었다), 3(현재도 피 우고 있다)	N	1	
27	음주여 부	DRK_YN	해당 수검자의 음주 상태 여부 - 0(마시지 않은다), 1(마신다)	N	1	
28	구강검 진 수검여 부	HCHK_O E_INSPE C_YN	• 해당 검진자가 구강검진을 선택하여 검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 - 0(미수검), 1(수검)	N	1	

◎ 청력이란?

- 소리의 강도에 대한 청각의 감수성 뜻하며 데시벨(dB)로 표시 됨
- 정상인은 0dB, 난청자일수록 그수가 커짐

◎ 치아우식증이란?

- 일반적으로 충치로 알려져 있으며, 원인은 섭취한 음식물을 구강 내 미생물들이 섭취하고 배설하여 산을 만들고,그 산들이 치아의 성분인 칼슘을 부식 시키는 질환

◎ 치아마모중이란?

 처근 부위의 잇몸이 내려가 노출된 치아표면이 마모된 것으로 잇몸이 내려앉아 시멘트질 안의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

◎ 치석이란?

- 치면세균막이 타액과 치은열구(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 내의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이 침착되어 만들어진 것

			속성정보				
NO	표준 항목명	영문명	설명	표현형 식 /단위	예시	비고	
29	치아우 식증유 무	CRS_YN	 해당 수검자의 치아우식증 유무에 대한 항목 0(없음), 1(있음) 		1		
30	결손치 유무	TTH_M SS_YN	• 해당 수검자의 결손치(다양한 원인(우식치주병,발치 등)으로 인하여 치열에서 탈락한 치아) 존재 유무에 대한 항목 - 0(없음), 1(있음)	N	1	2002	
31	치아마 모증유 무	ODT_TR B_YN	 해당 수검자의 치아마모증 유무에 대한 항목 0(없음), 1(있음) 		1	~ 2013 에만	
32	제3대구 치 (사랑니) 이상	WSDM_ DIS_YN	해당 수검자의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이상 유무 이(없음), 1(있음)	N	1	있음	
33	치석	TTR_YN	• 해당 수검자의 치석 여부 - 0(없음), 1(있음)		1		
34	데이터 공개일 자	DATA_S TDDT	• 데이터 작성 기준일자		2016 1220		

 ※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개방항목의 경우 개별 코드 값의 명칭 제공 시 데이터량의 증가에 따른 제공 서버의 부하 및 다운로드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코드 값만 제공함, 해당 코드의 명칭은 항목 설명을 참조하거나, 관련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

다. 건강검진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

- 행정구역이 연도별로 각각 코드화 되어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부터 신규로 편입됨에 따라, 2011년까지의 데이터에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 건강검진정보는 해당년도에 수검자에 대한 1차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2008년~) 주요 결과 및 문진응답 자료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자료는 미포함 된다.
- 2009년 건강검진제도 개편으로 인해 주요 검진 항목이 변경된바 연도별 건강검진 제도, 건강검진 항목, 문진 항목 및 유형, 변수명 등의 변경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구분	2002~2007년	2008년	2009~2015년
신장			
체중			
허리둘레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식전혈당(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혈색소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청지오티)AST			
(혈청지오티)ALT			
감마지티피			

- ※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자료는 2008년 생애부터 수록
- ※ 2012년부터
 LDL콜레스테롤의 계산 값과 측정치 값이 통합됨.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하되,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한 값이 들어감

제4절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다운로드 방법

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http://nhiss.nhis.or.kr/op/it/index.do)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활용 방법 소개

1) 1단계: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개방을 위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첫 화면에서 「다운로드」메뉴 선택



2) 2단계: 진료내역, 의약품처방, 건강검진 정보 중 다운로드를 원하는 정보와 연도 선택



3) **3단계**: 연령대, 성별, 사용자 거주 지역(시도 단위), 사용목적 등 간략한 사용자 정보 입력(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사용자의 주된 사용자층과 이용목적 등을 수집하여 향후 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4) **4단계** : 최종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하여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함, 첨부파일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연도의 데이터 및 사용자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음



제5절 사용자 지원 사항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활용가이드 및 사례 제공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개방을 위한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자주 문의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활용 가이드로 제공한다. 그 밖에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를 활용하여 개발된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서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3.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개방을 위한 웹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문의 기능 지원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개방을 위한 웹사이트 내에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이용과 관련한 온라인 문의가 가능하다. 그 외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거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케 한다.

4.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다운로드 전에 데모자료 제공기능 지원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다운로드 전에 사용자가 해당 정보의 데모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증가된다.

Q&A 묻고 답하기

- 1.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의 활용하고자 할 때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나?
- ⇒ 아니다.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NHISS)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2.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를 활용 하여 의료서비스 관련 어플이나 사이 트 등을 개설하는 등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 ⇒ 가능하다.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로서 개별 법령(의료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 3.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의 활용 가능 범위가 궁금하다. 학술·연구용으로도 활용 가능한가?
- ⇒ 학술·연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표본에 대한 건강관련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중점 개방데이터(3종)는 웹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구축과정에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이터의 대한 부분적 편집이나 가공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술 연구자들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제공되는 데이터에 비해 개방항목의 수도 적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술·연구용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 표본연구DB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